



2021

www.ftc.go.kr

7  **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절차를 6단계로
구체화하여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에 명문화
하였습니다. (하도급거래공정화 지침)**

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절차



8  **공사 규모와 관계없이 추가 공사에 대해서는 서면
발급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.
(하도급거래공정화 지침)**

또한 시공완료 후 즉시 정산합의서를 계약서로 대체한
경우 적법한 서면발급으로 인정한다는 규정은 법령상
근거가 불분명하여 삭제하였습니다.



최근 개정 하도급 분야 법규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!



**최근 개정
하도급 분야 법규의
주요 내용은
이렇습니다!**



 **공정거래위원회**



2021



FAIR TRADE COMMISSION



1 하도급법에 따라 보호되는 기술자료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.

기술자료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기술성, ②비밀 관리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, 이 비밀관리성 요건이 '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자료'에서 '비밀로 관리되는 자료'로 완화되었습니다.

2 중소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동 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.

(‘22년 2월 하도급법 시행 예정)

비밀유지계약서에는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, 기술 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, 비밀유지 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, 위반시 배상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합니다.

3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가 도입됨에 따라 법원은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자료도 제출을 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(‘22년 2월 하도급법 시행 예정)

또한 소송 과정에서 영업비밀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밀심리절차, 비밀유지명령, 소송기록 열람 청구 통지 등의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.

4 하도급법 적용 면제 대상 중소기업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.(하도급법 시행령 제2조 제4항)

	이전	개정 시행령
제조·수리 위탁 (연매출액)	20억 원 미만	30억 원 미만
건설 위탁 (시공능력평가액)	30억 원 미만	45억 원 미만

5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하도급업체를 대신하여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중견기업 전체로 확대되었습니다.

(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의2 제3항)

(이전) 대기업, 매출액 3천억 원 이상 중견기업 → (개정) 대기업, 전체 중견기업

6 피해구제시 벌점 경감 등 중소 하도급업체 보호 관점에서 벌점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.

(하도급법 시행령 별표3)

- 수급사업자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 피해구제 비율에 따라 벌점의 50%까지 경감될 수 있습니다.
 - * 단, 공정위 시정명령, 법원 판결 등에 따른 피해구제는 제외
- 건설하도급 입찰시 입찰정보를 공개한 경우 1점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.
 - * 입찰참가자 중 일부에게 미공개하거나 입찰결과 일부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미공개로 간주
- 기존 벌점 경감 사유 중 교육 이수, 표창 등 수급 사업자의 권리보호와 연관성이 높지 않은 사유는 벌점 경감 사유에서 삭제하였습니다.

벌점 경감 사유 개선 요약

연번	경감 사유	최대경감점수		개정 사항
		현행	개정안	
1	표준계약서 사용 우수	2	2	경감 요건 완화
2	하도급대금 현금 결제 비율 우수	1	1	현행 유지
3	건설하도급 입찰시 입찰 정보 공개 우수	-	1	신설
4	자율준수 프로그램(CP) 평가 우수업체	-	2	
5	하도급거래 모범업체	-	3	신설
6	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우수업체	3	3	
7	사업자 간 합의를 통한 직불	0.5	1	경감 항목 통합, 경감 폭 확대
	하도급대금 지급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직불	0.5		
8	수급사업자 피해를 구제	-	벌점의 50%	신설
	하도급법 특별 교육 이수	0.5	-	삭제
	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수여하는 표창 수상	2		
	하도급업체 선정 시 전자 입찰 비율 우수	0.5		

